

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20일
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	(우수 물류신기술등 제 호)	
신청인 (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)	법인명	법인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
	주소 (우) (전화:)	
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범위		
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(요약)		
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5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붙임 서류	1.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·범위 및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.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기술평가기간이 발급한 활용실적증명서 1부 3.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등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적은 서류 1부 4.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	납부 수수료
		1만원 (수입인지 첨부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